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창안제도 운영조례(안)」 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창안제도 운영조례(안)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는

구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구민의 구정참여 기회 제공과 구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구청장 방점으로 시행하여 오던 구민 창안제도를 조례로써 법제화하려는 데 있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○ 창안의 종류(안 제3조)

- 1) 자유창안 :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
- 2) 추천창안 : 시의성 있는 시책발굴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에서 모집한 제안중 우수과제로 채택되었거나 시행결과 현저한 효과를 거둔 제안

○ 제안자의 자격(안 제5조) : 누구나

○ 구민 창안 심의회 설치(안 제8조, 제9조)

위원장은 부구청장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, 위원은 4급 공무원 및 심사대상 제안 안건과 관계되는 5급 공무원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임명 또는 위촉(13인 이내)

○ 심사기준(안 제15조)

창의성, 경제성 또는 능률성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함

○ 시상(안 제17조, 제18조)

- 등 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, 노력상

- 시 기 : 연 2회

- 부 상 : 상장, 부상, 기념품(세부사항 규칙으로 정함)

□ 관련법규

○ 지방자치법 제15조 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○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0조(국민제안의 처리)

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 제안을 접수·처리할 수 있다.

□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무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제안제도를 주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를 한층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법률형식 측면에서 볼때 조문배열의 일반원칙에 따른 적절한 입법 형식을 갖춘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및 조례안의 각 조항간에 저촉되거나 충돌,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은 누구나 제안 할 수 있도록 하여 구정 참여의 대상을 넓혔습니다. 이것은 우리 구정의 대상이 구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, 장안이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,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, 새로운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훌륭한 장안이라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더 나아가 외국에서라도 도입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규정이라 하겠습니다.

그러함에도 본 조례안의 제명이 "영등포구민 장안제도"로, 제1조, 제2조, 제8조 등에 구민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, 장안의 의욕을 가진 영등포구의 주민이 아닌 자로부터 자칫 오해를 불러 장안 제출을 기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

○ 또한 "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위원장을 포함 하여 9인 이내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"고 규정되어 있는 제9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,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실무 위원회를 공무원만으로 구성할 때 현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현 실정에 밝고 전문지식을 갖추어 적합하다고도 볼수 있으나, 제안자 또는 제안의 의욕을 가진 분들이 바라볼 때에는 전문성, 공정성에 대한 의문과 자기 개선에 대한 노력을 기피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을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.

○ 서울시 자치구·구민장안 조례운영 현황은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7. 4

보고자 : 김찬재

타구청 구민창안 조례(규칙)운영 현황

운영기관	법규형식	조례(제정일)	규칙(제정일)	시 상 금 (단위:만원)	비고
서울특별시	조 례	1997.12.23	1998.1.5	금상400, 은상300 동상200, 장려100 노력상50	
성 동 구	조 례	1998.12.14		금상50, 은상30 동상10, 장려상5 노력상-기념품	
동대문구	조 례	2004.11.11	2004.12.30		
성 북 구	조 례	2004.6.15			
노 원 구	조 례		1996.5.6 운영	금상200, 은상100 동상50, 노력상20 참가상-기념품	
양 천 구	조 례	1991.4.4		금상100, 은상50 동상 20, 장려10 노력상-기념품	
강 서 구	조 례	1998.12.9	2002.3.15	금상100, 은상50 동상 30, 노력10	
구 로 구	규 칙	1997.1.8	1997.1.8	금상50, 은상30 동상20,장려10	
동 작 구	훈 령		1996.3.18 운영	금상50, 은상40 장려20, 노력상10 제출자-기념품	
송 파 구	조 례	1998.11.21	1998.12.24	금상100, 은상50 동상30, 장려상10	
강 동 구	조 례	2005.4.25			